

전형별 합격자 결정 및 동점자 처리기준

□ 1차전형 합격자 【100점 만점+(가점)】

- 1차전형 점수 + 가점 고득점순으로 1차전형 합격자를 선발
 - * 법률상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초과할 수 있음
 - ** 단, 가점사항이 여러 개로 법률상 가점과 중복 적용되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가점을 나중에 반영함

□ 합격예정자 【200점 만점+(가점)】

- 1차전형 점수 + 2차전형 점수 + 가점 고득점 순
 - * 법률상 가점을 부여할 경우 만점을 초과할 수 있음
 - ** 1차 전형 점수는 가점 포함 점수

□ 최종합격자 결정 【신체검사, 신원조사】

- 신체검사 및 범죄사실 등 신원조사 결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

【 입사후보자 운영 】

- '20. 8. 3. 기준 최종합격 예정자가 입사하지 않는 경우, 최종합격 예정자 결정 순위에 따른 차순위자를 3일 이내 추가합격 조치 가능
 - * 인사규정 채용세칙 제24조(후보자 운용)에 따름
- 단, 2차전형 만점의 80% 이상인 자에 한함

□ 전형단계별 동점자 처리기준

- 《1차전형 동점자》 법률상가점 → 특별가점(장애인만 해당) → 직무 경력점수 → 직무자격증점수 → 직무전공점수
 - *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
- 《합격예정자 동점자》 법률상가점 → 2차전형 → 1차전형 → 직무 경력 점수 → 직무자격증점수 → 직무전공점수
 - *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

□ 과락제 적용 기준

- (대상전형) 2차 면접전형에 적용
- (과락기준) 2차전형의 가점을 제외한 점수가 각 전형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

※ 모든 점수는 각 단계별 소수점 셋째짜리 이하 절사